

## 업무보고사항

### □ 제5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

- 제5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 '97. 2. 13  
(화순군의회 공고 1997-2호)

#### < 공고내용 >

- 집회일시 : '97. 2. 22(토) 10시
-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 □ 각종 안건 및 제출 및 발의상황

- 제5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97. 2. 13 의원 발의

- 발의자 : 박병옥 의원 외 3명
- 회기 : '97. 2. 22 ~ 2. 28 (7일간)

-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97년도 군·읍면정 보고 요구의 건 - '97. 2. 13 의원 발의

- 발의자 : 박병옥 의원 외 3명
- 주문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97년도 군·읍면정 추진 계획 보고를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97년도 군·읍면정 업무 보고 일정 : 별첨
- 제안이유
  - 제5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제11차 본회의 의결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채택하여 처리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담당 실과소장 및 읍면장으로 부터 처리결과를 직접 듣고 조치내용이 미흡하거나 추진이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조치토록 촉구하고
  - 군본청 및 사업소와 읍면의 '97년도 업무계획을 소상히 파악하여 의정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 집행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등을 지적, 시행착오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97년도 업무계획이 보다 내실있게 수립되어 적극 추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본건을 제안함.

○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97. 2. 13 의원발의

- 발의자 : 박병옥 의원 외 3명
- 출석요구내용 : 별첨

○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97. 2. 10 의원 발의

◦ 제안이유

지방행정기구의 일부 변경(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1441호 ’97. 1. 7)  
 에 따라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개정 1996. 3. 12 조례 제1402호)를  
 군행정기구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화순군행정기구의 일부변경에 따른 기획실 명칭 및 직제순위 변경
- 총무위원회 소관 기획실 명칭 및 직제순위 변경  
 경영정책실, 기획실 → 기획감사실, 경영정책실

※ ’97. 2. 10 의회운영위원회 회부

○ 화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97. 2. 4 군수제출

◦ 제안이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토요일 전일근무제 실시의 근거를 마련하고,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정하며, 재해 발생시에는 구호휴가를 실시도록 하여 신속한 재해 복구와 열심히 일하는 공직 풍토를 조성코자 현행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토요일 전일근무제의 실시 근거를 마련
- 연가일수는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잔여 연가 일수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해에 각각 1일의 연가일수를 가산하도록 함
- 의사의 진단서 없이 병가 일수가 6일을 초과할 경우 연가 일수에서 공제

-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
- 재해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5일 이내에 재해 구호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97. 2. 4 총무위원회 회부

## ○ 화순군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 - '97. 2. 4 군수 제출

### ○ 제안이유

1995. 1. 5 법률 제4873호로 제정된 소하천정비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으로 지정·고시한 하천에 대하여 점용료 및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 주요골자

#### - 점용료등의 징수대상(안 2조)

소하천정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자로부터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을 징수

#### - 점용료등의 산정기준(안 3조)

- 공작물의 설치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지시가표준액의 6/100

- 벼 및 특수작물의 재배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 농지 소득금액의 15/100 또는 인근지시가표준액의 5/100중 저렴한 금액

- 식물의 재식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지시가표준액의 5/100

※ '97. 2. 4 - 산업·건설위원회 회부

## ○ 화순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 '97. 2. 4 군수제출

### ○ 제안이유

자연재해대책법이 1995. 12. 6 법률 제4993호로 개정됨에 따라 화순군 수방단운영조례를 법률에 적합하도록 개정코자 함.

### ○ 주요골자

#### - 수방단의 임무(안 2조)

수방단은 재해사전대비 점검·정비,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해가 발생한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한 예찰 및 경계와 주민대피 유도,

재해응급 대책, 방재의 날 행사 참여 및 기타 방재상 필요한 사항을 수행

- 수방단의 조직 (안 3조)

재해우려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방재와 관련있는 기관 및 업체의 소속직원, 군수가 방재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 중 본인의 동의를 얻어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

- 수방단의 편성 (안 5조)

- 본부 및 경계반 : 10명 내외
- 복 구 반 : 3명 내외
- 구 호 반 : 10명 내외

※ '97. 2. 4 산업·건설위원회 회부

○ 화순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 '97. 2. 3 군수제출

○ 제안이유

자연재해대책법이 1995. 12. 6 법률 제4993호로 개정됨에 따라 재해대책 기금의 조성과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주요골자

- 기금의 조성 (안 2조)

-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의한 재해대책기금 적립금
- 기금의 운용수입
- 기타 잡수입등

- 기금의 운영관리 (안 3조)

- 조성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국채 또는 공채의 매입이나 금융기관 예탁
- 잔여분은 당해년도 재해예방사업비 및 재해응급복구비등에 충당

- 기금의 회계관리 (안 5조)

- 수입, 지출 등 출납에 관하여는 화순군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

※ '97. 2. 4 산업·건설위원회 회부

## ○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97. 2. 17 군수제출

## ○ 제안사유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하고 타법령에서 용어 개정에 따라 이를 일치시키기 위함.

## ○ 주요골자

## 가. 농어촌주택 개량등에 대한 감면 (안 제 10조 1, 2항)

- "건축물 면적"을 "건축물 바닥면적"으로 개정
-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자 및 그 가족이 당해지역에 상시거주할 목적으로 취락지구 지정대상 지역내의 주택으로서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감면조항 신설

## 나.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안 제11조 1항)

- 건축법 개정으로 "사용검사일"을 "사용승인일"로 개정
-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의 건축물만 50% 경감하였으나 공동주택용 부동산으로 개정하여 건물과 부속토지를 50% 경감 (종토세, 재산세)

## 다. 농외소득 개발을 위한 감면 (안 제12조 1항)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를 "협동화사업단지안에서 협동화 사업 실천 계획승인을 얻어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3의 업종을 영위하기 위하여 협동화 단지내에서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로 개정

## 라. 재래시장 개발 · 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안 제18조 2항)

-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전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산정된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시행 구역안에서 재건축사업시행자나 재건축당시의 재래시장에서 5년이상 입점한 상인이 재개발 건축 사업시행으로 최초로 취득하는자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조항 신설

※ '97. 2. 17 총무위원회 회부

○ 화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 '97. 2. 17 군수제출

○ 제안이유

주차장법등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현실화하며,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 주요골자

- 노외주차장 부대시설의 범위 (안 8조의 2)

- 부대시설의 범위를 부분정비업소, 세차시설, 자동차관련 사무실 등까지 확대하고 총시설면적등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을 30% 까지 확대하여 정함

- 공영주차장 요금표 (안 10조)

- 주차요금 개정 (단위:원)

읍지역	소형	300 → 500
	대형	500 → 700
면지역	소형	200 → 300
	대형	300 → 500

-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안 19조)

- 설치지역을 종전 도시계획구역내에서 준도시지역 및 준농림 지역까지 확대하고

- 부설주차장 인근의 범위를 직선거리 200m이내 또는 도보거리 500m이내와 당해 동리 및 통행여건이 편리한 인근동리까지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 설치기준 (안 23조)

- 주차장 주차대수 규모가 20대이상인 경우에 1면이상 전용구획을 설치

- 주차장 특별회계 (안 26조 제1항)

-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과태료를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으로 하고

- 주차장 설치 비용 융자금액 (안 28조)

- 민영주차장 설치융자금 한도액을 1,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상향조정

※ '97. 2. 17 산업·건설위원회 회부

○ 화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 '97. 2. 18 군수제출

○ 제안이유

우리군 지방상수도 재정결함 보전과 수질개선등 맑은 물 공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설분담금, 상수도요금, 손료, 제수수료를 인상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시설분담금, 손료, 제수수료 인상 : 29%

- 상수도 요금 인상

가정용 : 15% ( $2,000 \rightarrow 2,300$ ) 업무용 : 20% ( $6,240 \rightarrow 7,490$ )

영업용 : 20% ( $10,920 \rightarrow 13,100$ ) 육탕 1종 : 15% ( $62,650 \rightarrow 75,180$ )

육탕 2종 : 15% ( $88,400 \rightarrow 106,610$ )

※ '97. 2. 18 총무위원회 회부

○ 화순군오수·분뇨·축산폐수처리 및 분뇨수집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 '97. 2. 18 군수제출

○ 제안이유

분뇨수집수수료 및 정화조 청소요금의 인상과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와 분뇨반입고지서 서식화로 부당요금 징수사례를 미연에 방지코자 함.

○ 주요골자

- 분뇨관련 영업자는 분뇨처리장에 분뇨 및 정화조오니 반입시마다 "분뇨 반입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 제6조 제4항 신설 및, 별지 제9호서식 신설)

- 분뇨수집수수료 및 정화조 청소요금 인상

• 분뇨수집수수료 ————— 20% 인상 ( $123 \rightarrow 148$ )

- 정화조 청소요금
  - 기본 : 5.6% 인상 ( $6,550 \rightarrow 6,920$ )
  - 초과 : 21% 인상 ( $710 \rightarrow 860$ )

(안 제9조 제1항 제3호중 요금변경)

- 분뇨관련 영업자는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시마다 "분뇨수집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등 납부고지서"를 정화조등을 청소한자에게 납부 고지하여야 한다.

(안 제9조 제1항 신설 및, 별지 제9호서식 신설 삽입)

※ '97. 2. 18 총무위원회 회부

### ◉ 계류중 안건

- 총무위원회
  -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사다리차 운전원 1명 증원) - '96. 7. 29 총무위원회 회부
  - 화순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등에관한조례안  
- '96. 12. 23 총무위원회 회부
- 산업·건설위원회 — '97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화순 4차 택지개발사업)  
- '96. 12. 20 산업·건설위원회 회부

## □ 민원서류 접수현황

○ 건 명 : 남면 외남천 정비사업 사업계획 변경 요망 - '97. 1. 23

- 진정인 : 남면 원리 2구 김용복 외 33

- 내 용

- 남면 외남천 정비사업으로 원리 2구 주민들의 생활상 불편 및 휴식 공간이 소멸되지 않도록 조치 요망

- 조치내용

- 산업·건설위원회 회부 ('97. 1. 30)
-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집행부 이첩 ('97. 2. 19)

○ 건 명 : 『능주 잠정리 농로개설』 진정 - '97. 1. 31

- 진정인 : 능주면 잠정리 고만수 외 주민일동

- 진정요지

· 농로개설구간 : 화순군 능주면 잠정리 회관 - 내리

· 기대효과

- 경운기, 차량 진입 용이로 영농상 인건비 절감

- 산불 발생시 소방차, 인력 진입 용이

- 휴경지 재경작 가능과 농지의 휴경화 방지기여

※ 농로개설 예정지는 지적도상 3m 정도의 도로가 있어 인근 토지 소유자  
의 동의가 필요치 않으며 사업비가 절감됨

- 조치내용

산업·건설위원회 회부 ('97. 2. 13)

○ 건 명 : 동복 우회도로 노선변경 탄원 - '97. 2. 6

- 진정인 : 동복면 독상리 주민일동

- 내용

동복 우회도로 노선이 독상리 마을 앞을 지나게 되어 소음공해와 산림  
훼손으로 인한 농경지 피해등이 우려되므로 확정된 노선의 변경 요망

- 조치내용

산업·건설위원회 회부 - '97. 2. 19

○ 건 명 : 국도 29호선 진입로 변경 건의문

- 건의자 : 화순읍 주도리 혀삼채 외 188인

- 내용

화순 - 능주간 국도 29호선 4차선 확포장공사로 인하여 주도리 마을  
진입하는 기존의 진입로가 폐쇄되고 새로운 진입로를 개설, 주민들은  
원거리로 진입하게 되어 있어 교통불편 및 지역발전의 저해요소가 될  
것을 우려 현재 추진중인 진입로 공사의 시정을 요구함.

- 조치내용

산업·건설위원회 회부 - '97. 2. 19

□ 관계공무원 신분이동에 관한 사항

- '97. 1. 17 화순군 인사발령에 의하여
  - 김재휴 문화공보실장 → 전라남도 전출
  - 최영옥 나주시 전입 → 문화공보실장

□ 제5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

- 제52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97년도 군·읍면정 추진계획 보고 요구의 건
-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97 군정 주요 시책추진 방향 청취의 건

## 제 52 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97. 2. 22 ~ 2. 28 (7일간)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97. 2. 22 (토) 10:00	<p style="text-align: center;">개 회 식</p> <p>1. 제52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 및 97년도 군·읍면정 추진계획              보고요구의 건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97 군정 주요 시책추진 방향 청취의 건</p>	
'97. 2. 23 (일)	휴 회	
'97. 2. 24 (월) 10:00	<p>1.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및 '97년도 군정 추진계획 보고청취의 건              (기획감사실, 경영정책실, 문화공보실,              민원봉사실, 내무과, 재무과, 지역경제과)</p>	
'97. 2. 25 (화) 10:00	<p>1.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및 '97년도 군정 추진계획 보고청취의 건              (사회복지과, 산업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온천개발사업소)</p>	(상임위 활동) -총무위원회 회의 -산업·건설 위원회 회의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97. 2. 26 (수) 10:00	1.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97년도 군정 추진계획 보고청취의건  (지적과, 환경보호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농촌지도소, 보건소, 위생환경사업소, 휴양림관리사업소)	
'97. 2. 27 (목) 10:00	1.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97년도 읍·면정 추진계획 보고청취의건  (화순읍, 한천면, 춘양면, 청풍면, 이양면, 능주면, 도곡면)	
'97. 2. 28 (금) 10:00	1.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97년도 읍·면정 추진계획 보고청취의건  (도암면, 이서면, 북면, 동복면, 남면, 동면)  2.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화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화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화순군오수·분뇨·축산폐수처리 및 분뇨 수집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중개정조례안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p>7. 화순군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p> <p>8. 화순군수방단운영조례 개정조례안</p> <p>9. 화순군재해대책기금 운용 관리조례안</p> <p>10. 화순군주차장조례 중개정조례안</p>	